

유급지원병제 입법 예고... 이렇게 운영된다

의무복무 후 하사제급·영내서 생활 내년 시행... 연봉 1,500만~2,213만원

국방부는 10일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전투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범도입키로 한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했다.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급지원병이란=속련도와 전문성을 요하는 직위에 대해 의무복무를 마치고 지원자에 한해 6개월에서 최대 18개월 동안 추가 복무하게 하는 제도다.

첨단·정예화군을 목표로 하는 '국방개혁 2020'과 군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예상되는 전투·기술분야 속련병과 첨단 장비운용 분야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범도입된다.

법률상으로는 유급지원병이 공식 명칭이지만 군은 '전문병'이라는 용어가 유급지원병의 취지를 잘 반영할 수 있다는 관

점에 따라 전문병 명칭을 혼용하기로 했다.

◇유급지원병의 종류 및 선발절차=업무의 특성에 따라 분대장, 레이더병, 정비병 등 전투·기술 분야 속련병과 차기전차, K-9 자주포, KDX-III 구축함, 방공포병 등 첨단장비운용 전문병으로 나뉜다. 의무복무 기간 때와 마찬가지로 영내에서 생활한다.

전투·기술분야 속련병은 의무복무 만료 후 지원자에 한해 6~18개월간 추가 복무한다. 의무복무 만료 2개월 전에 선발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유급지원병의 계급 및 보수=유급지원병은 속련병과 첨단장비 운용 전문병 등 종류에 상관없이 병사로서의 의무복무기간이 끝나면 하사 계급이 부여돼 단기복무 부사관 신분이다.

의무복무 기간에는 일반 병사와 같은 급여를 받는다.

의무복무기간에 이어 추가로 최대 18개월을 추가 복무할 경우 추가복무 기간에 받는 보수 총액은 퇴직금까지 포함해 총 2천240만 원에서 3천320만 원 수준이다. 연봉개념으로는 연 1천500만원~2천213만원 정도다.

◇모집 및 운용계획=국방부는 오는 9월부터 홍보를 거쳐 11월부터 두 달 동안 내년 1~2월에 전역하는 속련분야 병사들과 입대를 앞둔 병역 의무자들을 대상으로 유급지원병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2천명(속련병 600명, 첨단장비 운용병 1천400명)의 유급지원병을 시범 운영한 뒤 매년 1천~1천500명씩 늘려 2020년 이후에는 속련분야 1만명, 첨단장비 운용 전문직위 3만명 등 총 4만명 규모의 유급지원병을 운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대북 중유 선적시설 막바지 점검



울산시 남구 고사동 SK에너지 돌핀 5부두에서 SK 근로자들이 비가 오는 가운데 북한에 지원되는 중유 선적시설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대북 중유는 11일 이 부두에서 원유수송선에 선적돼 오는 12일 북한으로 운송된다. 연합뉴스

참여정부 임기말 공무원 무더기 증원

국무회의, 재경부 등 2,100여명 직제·증원 개편안 의결

중앙부처 공무원 증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될 때마다 "증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힌 참여정부가 임기말에 대규모로 공무원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1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제청 등 4개 부처 공무원을 2천100여명 늘리는 직제·증원 개편안을 의결했다.

행정자치부가 확정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한 개편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113명, 재정경제부 5명, 국제청 1천998명, 교육인적자

원부 35명 등 모두 2천151명의 공무원이 증원된다.

특히 국제청 공무원의 경우 올해초까지만 해도 1천여명 수준에서 공무원을 늘린다는 게 정부 방침이었으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무려 두 배에 이르는 1천998명을 증원하기로 확정했다.

분야별로는 새로 추진되는 국제청의 근로장려제(EITC) 업무를 위해 관련 공무원이 1천798명 늘어난다. 이번 증원에 따라 국제청에는 '근로소득지원국'과 그 산하에 3개 과가 신설된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 등 국제협력업무의 성공적 추진을 명목으로 국제협력관을 신설하는 등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113명이나 늘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의 신규 수요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임기말에 공무원을 2천명 이상 늘리는 것은 과거 정부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헌법소원' 심판 사건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판단하게 됐다.

이 사건 주심인 송두환 헌법재판관이 속한 지정재판부는 10일 오전 평의를 열어 노 대통령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헌재측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의 특강, 인터뷰 발언 등이 공무원의 선거준비 의무를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린데 대해 지난 달 21일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헌재측은 이 사건을 '주요 사건'으로 지정했다.

연합뉴스

시변, '기자실 통폐합 위헌' 헌법 소원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기자실 방안'이 국민과 언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10일 오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시변은 "취재지원 시스템을 한 심판 청구에서 시변은 '정부기관에 설치된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민의 재산이자 공간'이라며 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언론기관의 취재 및 보도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

유침해, 국민의 알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시변은 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헌법은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법률에 의하지 않는 등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여성, 희망 땀 '사회복무'로 병역 이행 복무기간 22개월로 확정...수형자·고아도 가능

이르면 2009년부터 여성과 수형자, 고아 등도 본인이 희망하면 '사회복무' 형식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사회복무 기간은 육군 현역병보다 6개월이 짧은 22개월로 확정됐으나 공중보건의, 전문연구원, 국제협력요원, 예술체육인 등은 현행 복무기간을 유지토록 했다.

정부는 10일 국방부와 병무청이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병역제도개선'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세부 계획으로는 신체 등위 1~3급은 현역으로, 신체등급 4급(보충역)과 5급(제2국민역)은 사회복무 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토록 했다. 다만 5급 중 지체부자유자, 정신질환자 등은 사회복무 요원이 될 수 없으며 병역이 면제된다.

그러나 5급 중 신체 일부 결손, 신체활동 일부제한, 약물로 조절 가능한 질환, 중학 중퇴, 귀화자,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 1년6개월 이상 수형자, 고아 등은 사회복무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여성은 희망자에

한해 사회복무 기회 부여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2012년 이후 현역 자원이 남아돌면 신체등위 3급 가운데 일부도 사회복무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사회복무 요원의 복무기간은 22개월로 확정됐다. 다만 공중보건의와 전문연구원(36개월), 국제협력요원(30개월), 예술체육요원(34개월) 등은 현행 복무기간과 동일하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병역법을 개정해 이르면 2009년부터 여성과 수형자, 고아 등에게도 사회복무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에 사회복무로 편입되는 요원은 장애인 및 노인수발, 가출청소년 자활후견 등 복지분야 1만1천458명과 119 응급환자 이송 등 보건의료분야 1천919명, 산불·환경·문화재·해양투기 감시, 지하철 안전 등 환경 및 안전분야 5천623명 등 1만9천명이다.

연합뉴스

군내 구타·언어폭력 등 법으로 제정 금지한다

앞으로 군내에서 구타나 가혹행위, 언어폭력이 법으로 금지되고, 병 상호간에도 권한이 부여된 자를 제외하고는 어떤 명령이나 지시, 간섭도 금지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군인의 권리와 의무는 물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군인복무기본법안' 등 모두 45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법안은 병 상호 간에도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병에게 어떠한 명령이나 부당한 간섭을 할 수 없으며, 성희롱이나 성추행도 금지하고 있다.

또 전이나 사변, 국가비상사태나 천재지변 등을 제외하고는 영내거주 의무가 없는 군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영내에 대기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부대별로 복무에 관한 불만과 고충 처리를 위한 전문 상담관을 두도록 했다.

연합뉴스

유비모드 특판사업부 052-229-9071-2/8894내선10-3933-0114

실시간 유대폰으로 매장/직원 관리!

유비모드 특판사업부

RODEM 직수입 엔틱 원물백상 - 로템갤러리 신제품출시

RODEM

특별가맹점행사

신상품 30%~최고 50%

유비모드 특판사업부